

대구지방법원 2022. 2. 10 선고 2021나3232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2. 10 선고 2021나32320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9 선고 2020가단5961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K(개명 전 A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

담당변호사 이용호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

담당변호사 김동우, 박현식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변호사 정대규

변론종결 2022. 1. 13.

판결선고 2022. 2. 10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9. 선고 2020가단59618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위적으로, 피고들과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9 지분에 관하여 2019. 11. 3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D[E생]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들은 위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숙, 판사 이지혜, 판사 이준영

별지